

전문인력 양성기관 지정신청서

※ 바탕색이 어두운 난은 신청인이 적지 않습니다.

접수번호		접수일자		처리기간	30일
신청인	기관명		법인등록번호(사업자등록번호)		
	대표자 성명		사무소 전화번호		
	사무소 주소				
	전자우편				

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」 제10조제2항,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2항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6조제3항에 따라 위와 같이 전문인력 양성기관의 지정을 신청합니다.

년 월 일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농림축산식품부장관 또는
특별시장·광역시장·특별자치시장· 귀하
도지사·특별자치도지사

신청인 제출 서류	1. 「그린바이오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시행령」 제7조제1항제1호에 해당하는 연 구소·기관 또는 단체임을 증명하는 서류 2. 교육과정 및 교육내용이 포함된 교육계획서 3. 교육시설 및 교육장비의 보유 현황 4. 전문 교육 강사의 확보 현황 5. 운영경비 조달계획서	수수료 없음
담당 공무원 확인사항	법인 등기사항증명서(신청인이 법인인 경우만 해당합니다) 및 사업자등록증명(주 민등록번호가 제외된 사업자등록증명을 말합니다)	

행정정보 공동이용 동의서

신청인은 이 신청에 따른 업무처리와 관련하여 담당 공무원이 「전자정부법」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
을 통하여 사업자등록증명을 확인하는 것에 동의합니다.

*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신청인이 직접 그 서류를 제출해야 합니다.

신청인 (서명 또는 인)

처리절차

신청서 작성	➔	접수	➔	서류검토 및 심사	➔	지정서 발급
--------	---	----	---	--------------	---	--------

신청인

처리기관: 농림축산식품부 또는 시·도지사